



금융위원회



1 현 황

201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와 7개 기금(① 공적자금상환기금, ②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③ 기술신용보증기금, ④ 신용보증기금, 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⑦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구성된다.

총계 기준 세입·수입 결산액은 총 22조 3,566억원으로 추경예산액 23조 9,598억원 대비 93.3%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은 각각 295억원 및 7억원이다.

[표 1]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예산 (A)					
예 산	21,692	21,692	167,857	137,683	29,453	721	634.7
- 일반회계	21,692	21,692	167,857	137,683	29,453	721	634.7
기 금	23,818,105	23,938,105	23,474,212	22,218,926	-	-	92.8
- 공적자금상환기금	3,260,040	3,260,040	2,859,726	2,859,726	-	-	87.7
-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	101,443	101,443	101,443	100,338	-	-	98.9
- 기술신용보증기금	2,499,767	2,539,767	2,539,767	2,539,767	-	-	100.0
- 신용보증기금	5,574,188	5,654,188	6,286,783	6,286,783	-	-	111.2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513,370	1,513,370	1,480,334	1,480,334	-	-	97.8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033,870	4,033,870	2,780,634	2,780,634	-	-	68.9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6,835,427	6,835,427	6,171,344	6,171,344	-	-	90.3
총 계	23,839,797	23,959,797	23,642,069	22,356,609	29,453	721	93.3

자료: 금융위원회

총계 기준 세출·지출 결산액은 총 23조 6,124억원으로 예산현액 25조 2,119억원 대비 93.6%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1억원과 불용액 8,697억원이 각각 발생하였다.

심지현 예산분석관(sjh0125@assembly.go.kr, 788-4625)

[표 2]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예산					
예 산	1,220,317	1,270,317	1,270,410	1,250,083	137	20,190	98.4
- 일반회계	1,220,317	1,270,317	1,270,410	1,250,083	137	20,190	98.4
기 금	23,818,105	23,938,105	23,941,502	22,362,334	12	849,510	93.4
- 공적자금상환기금	3,260,040	3,260,040	3,260,040	2,859,726	-	145,861	87.7
-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	101,443	101,443	101,443	100,338	-	-	98.9
- 기술신용보증기금	2,499,767	2,539,767	2,539,790	2,683,175	-	151,552	105.6
- 신용보증기금	5,574,188	5,654,188	5,656,617	6,286,783	-	423,165	111.2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513,370	1,513,370	1,513,370	1,480,334	-	8,012	97.8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033,870	4,033,870	4,034,815	2,780,634	12	15,076	68.9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6,835,427	6,835,427	6,835,427	6,171,344	-	105,844	90.3
총 계	25,038,422	25,208,422	25,211,912	23,612,417	149	869,700	93.6

자료: 금융위원회

총지출 기준 결산액은 1조 2,501억원으로,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었다. 공적자금상환기금 계획액의 대부분은 소송패소금 예상액이었으나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표 3] 총지출 기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2014 결산 (A)	2015 예산		2015 결산 (B)	증 감	
		본예산	추경예산		B-A	(B-A)/A
일반회계	117,962	1,220,317	1,270,317	1,250,083	1,132,121	959.7
공적자금상환기금	36,885	110,058	110,058	2	-36,883	-100.0
합 계	154,847	1,330,375	1,380,375	1,250,085	1,095,238	707.3

주: 1.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제외한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은 금융성 기금으로 총지출 산정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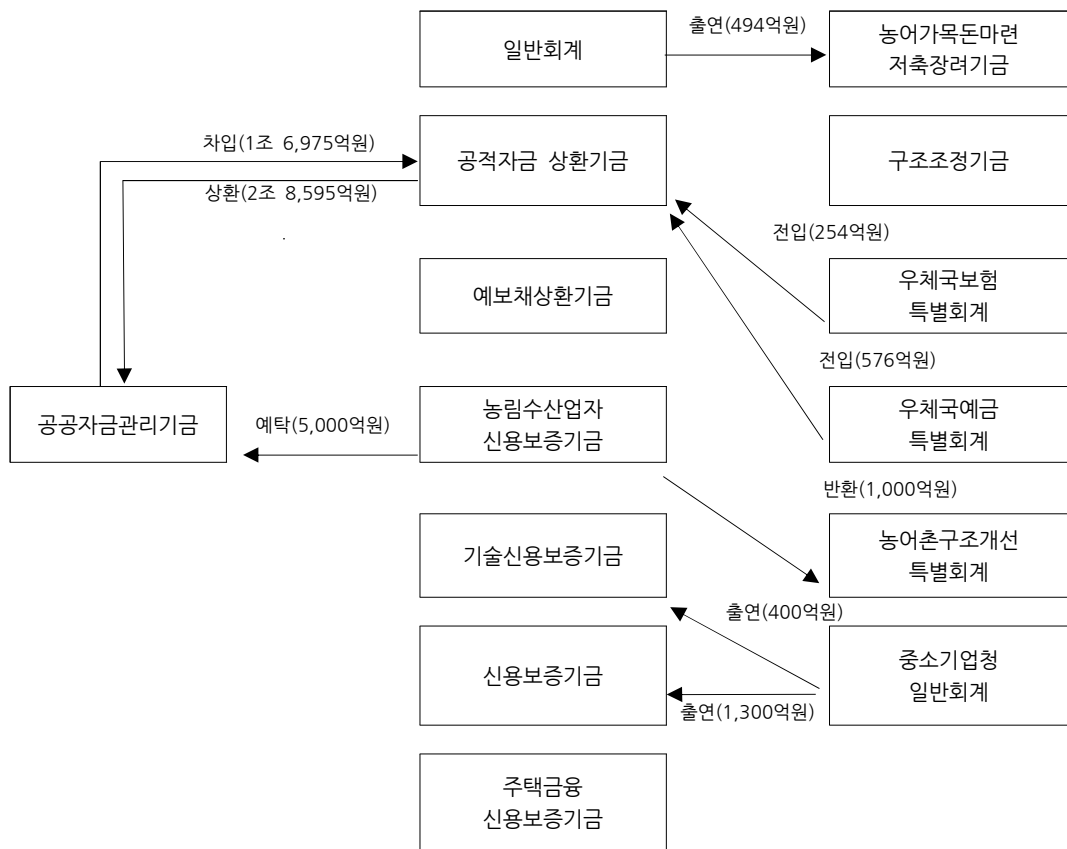
2.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소송패소금 예상액(1,088억원)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되지 않았음.

자료: 금융위원회

회계·기금간 재원이전을 살펴보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일반회계에서 494억원을 출연받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우체국보험·예금특별회계에서 830억원을 전입받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조 6,975억원을 차입하였으며, 공공자금관리

기금에 2조 8,595억원을 상환하였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5,000억원을 예탁하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1,000억원을 반환하였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청 일반회계로부터 각각 1,300억원 및 400억원을 출연받아 재원으로 활용하였다.

[그림 1]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주: 총계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201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세출 및 지출예산은 총 25조 2,084억 원으로서 4개 분야, 4개 부문, 19개 프로그램, 49개 단위사업, 8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도 금융위원회의 분야·부문별 주요 사업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금융위원회 2015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현황

분야	부문	프로그램	주요 단위사업	주요 세부사업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금융정책	공적자금관리 등 3개	전입금환급(1,088억원) 등 5개
		자금세탁방지시스템 선진화	자금세탁방지추진 등 2개	FIU 전산망 구축운영(48억원) 등 3개
		금융산업글로벌화	금융중심지조성과발전 등 2개	금융중심지지원센터보조(6억원) 등 3개
		저축장려	저축장려 1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494억원) 등 2개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 1개	불합리한 금융관행 조사 및 개선(2억원) 등 2개
		산업금융지원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출자 등 2개	설비투자펀드(800억원) 등 2개
		주택금융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출자 1개	한국주택금융공사출자(500억원) 1개
		금융행정효율화	본부 인건비 등 6개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165억원) 등 18개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회계기금간전출(일반회계) 1개	일반회계에서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금(1조원) 1개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원금상환(공적자금상환기금) 1개	공적자금상환기금에서공자기금으로 예수원금상환(1조 30억원) 1개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공적자금상환기금) 1개	공적자금상환기금에서공자기금으로 예수이자상환(1조 8,923억원) 1개
		차입금원금상환	국공채원금상환(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개	예보채등원금상환(4조 6,900억원) 1개

분야	부문	프로그램	주요 단위사업	주요 세부사업
사회 복지	주택	주택금융지원	주신보운용(주신보계정) 등 4개	대위변제(3,242억원)등 7개
농림 수산	농업·농촌	저축장려	저축장려 1개	저축장려금(988억원) 1개
		산업금융지원	농어민금융지원 1개	대위변제금(1,618억원)등 3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금융지원	산업금융지원	산업금융지원(신용보증기금) 4개	일반보증대위변제(1조9,355억원)등 18개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2015년도 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 ②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출자(설비투자) 사업, ③ 보증연계투자 사업 등이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공적자금기금)은 국고채 발행금리를 과다계상하여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1,634억원이 감액(2조 557억원 → 1조 8,923억원)되었고,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출자는 2차 설비투자가 사업 첫 해라는 점을 감안하여 100억원이 감액(900억원 → 800억원)되었으며, 보증연계투자(신용보증기금)은 투자성과를 지켜본 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50억원이 감액(300억원 → 250억원)되었다.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되지는 않았으나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사업으로 ①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출자(해운보증기구) 사업, ② 저축장려금 사업, ③ 대위변제(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사업 등이 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출자(해운보증기구) 사업은 민간기업의 출자금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¹⁾ 저축장려금 사업은 연간 저축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²⁾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사업은 대위변제 예상발생분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³⁾

국회 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①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출자(설비투자) 사업, ②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 사업 등이 있다.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출자(설비투자) 사업은 「안전설비투자펀드가 중소·중견기업 위주의 안전 지원이라는 정책취지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고, 타 정책자금 등과의 중복지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⁴⁾」, 금

1)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출자(해운보증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 2014.10.

2) 저축장려금: 정무위원회, 「201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10.

3) 대위변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10.

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 사업은 「금융 관련 해외 전문인력의 국내 유치를 위한 Job Fair사업은 수혜자인 금융관련 협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관련 예산을 삭감하되, 금융위원회는 금융관련 협회의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동 사업이 계속 추진되도록 할 것⁵⁾」 등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출자 사업이 있다. 동 사업에 대하여는 공사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추가 출자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⁶⁾

이하에서는 201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①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출자(설비투자) 사업, ② 저축장려금 사업 등을 비롯하여 ③ 기타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사업을 분석한다.

4) 국회,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4.12.

5) 정무위원회, 「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4.11.

6)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사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5.7.

II

주요 현안 분석

1

산업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산업금융과)

「산업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해운보증기구를 설립하는 등 경기회복 및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출자를 정책금융기관에 실시하는 것이다. 동 프로그램은 2개의 단위사업과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도 예산 1,300억원 중 1,100억원이 집행되었다.

이하에서는 2개 출자사업의 집행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표 1] 산업금융지원 프로그램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5 예산		2015 결산	2016예산
		본예산	추경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출자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출자 (설비투자펀드)	80,000	80,000	80,000	80,000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출자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출자 (해운보증기구 설립)	50,000	50,000	30,000	40,000
총 계		130,000	130,000	110,000	120,000

자료: 금융위원회

1-1. 안전설비투자 지원대상 정비 필요

가. 현황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출자(설비투자펀드)」사업은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설비투자펀드 자본금을 출자하려는 것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60억원이 출자되었다. 2015년도 예산은 800억원(산업은행 400억원, 기업은행 400억원)이 편성되어 전액 출자되었다.

[표 2] 연도별 산은·기은에 대한 출자 예산

(단위: 억원)

	2013	2014	2015	2016	누계
예 산	900	300	800	800	2,800
결 산	862	298	800	800	2,760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14조원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설비투자자금을 낮은 금리(대출기준금리 대비 1%p 인하)로 지원할 계획이며, 2015년까지 총 10.5조원이 지원되었다.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하는 이유는 저리대출에 따른 은행의 예상손실분(8,100억원 추정)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대출 또는 투자의 형태로 민간에 설비투자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설비투자는 ① 1차 설비투자(5조원, 2012~2014), ② 2차 설비투자(3조원, 2014~2016), ③ 지역설비투자(1조원, 2014~2015) 및 ④ 안전설비투자(5조원, 2014~2017)로 분류되며, 2015년 계획액 3조원 중 2조 8,123억이 공급되었다.

[표 3] 연도별·유형별 설비투자 지원규모

(단위: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3월)
1차 설비투자	-	14,903	-	26,710	누적 50,000	13,539	-	-	-	-
2차 설비투자	-	-	-	-	10,000	20,638	10,000	7,191	10,000	1,277
지역설비투자	-	-	-	-	5,000	5,674	5,000	4,352	-	82
안전설비투자	-	-	-	-	5,000	728	15,000	16,580	15,000	1,692

자료: 금융위원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안전설비투자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안전설비투자 펀드의 목적이 ‘기업 근로자의 작업환경 안전’이 아니라 ‘국민안전 관련업종의 생산활동 지원’에 편중되어 있다.

안전설비투자의 대상은 ① 일반 기업이 생산설비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자를 실시하는 경우(안전설비)와 ② 안전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일반 설비투자를 실시하는 경우(안전업종)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안전설비투자 공급실적이 저조하자, 2015년 1월 「안전설비투자 펀드 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안전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하였다. 당초 지침 상 안전업종 지원대상은 “안전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로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을 통해 안전업종 지원대상을 구체화하였다.¹⁾

[표 4] 안전설비투자 지원대상 변화(안전관련 업종)

변경 전(2014)	변경 후(2015)
안전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	(좌 동) 통계청 방재산업 특수 분류체계 제정에 따라 포함된 업종 등 그 외 국민위생 관련업 등 지원 필요성이 있는 업종 - (국민위생) 식품 위생용 종이상자 및 용기 제조업 등 - (의료안전) 의료기기제조 등 - (건설안전) 건설광업용 기계장비 도매업 등 - (생활안전)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절연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등 - (간접업종) 제철·제강업 등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를 재구성

1) 이후 금융위원회는 2015년 3월 지침을 다시 개정하여 ‘안전대진단에 따른 연계사업 수주기업 및 노후시설 개선 대상기업’, ‘해외인증 등에 필요한 안전관련 장비 설치 및 장비 제조업체의 관련 시설투자’를 지원대상에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안전업종 지원 수요가 급증하였고, 현재까지 누적 지원된 1조 8,999억원 중 85.3%인 1조 6,201억원이 안전업종에 대한 지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을 주된 지원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지원액의 98.5%가 일반 기업의 안전설비투자가 아니라 안전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일반 설비투자 용도로 이루어졌다.

즉, 「기업 근로자의 작업환경 안전 증진」이라는 목표보다는 「국민안전 관련업종의 생산활동 지원」이라는 목적에 편중되어 안전설비투자 펀드가 공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2015년도 안전설비투자의 유형 구분

(단위: 억원, %)

	안전설비	안전업종	계
산업은행	2,655 (28.9)	6,537 (71.1)	9,192 (100)
중소기업은행	143 (1.5)	9,664 (98.5)	9,807 (100)
계	2,798 (14.7)	16,201 (85.3)	18,999 (100)

주: 괄호 안은 비중

자료: 금융위원회

둘째, 금융위원회는 안전과 관련성이 낮은 업종에까지 지원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침에 규정된 안전업종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국민안전 증진과 관련성이 낮은 업종들이 안전업종으로 분류되어 동 펀드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떡류 제조업, 빵류 제조업 등 식품과 관련된 업종은 「안전설비투자펀드 운용지침」에 따라 일괄적으로 「국민위생」 항목으로 분류되어 안전업종으로 간주된다. 그밖에 화장품제조업, 합성섬유제조업, 비디오 및 영상기기 제조업, 컴퓨터 도매업, 일반 창고업 등 안전과 연관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적인 업종도 모두 안전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처럼 안전업종 지원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결과 안전설비투자 실적은 제고되었으나, 기업근로자의 안전 증진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고 국민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업종에까지 지원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기업근로자의 안전과 국민안전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안전과 직접 연계된 업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대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표 6] 안전설비투자 주요 지원업종(안전업종)

유형 구분		산업은행	기업은행
광업		-	석회석 광업·건설용 쇄석
		-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
제조업	식료품	도축업·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떡류·빵류 제조업 등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등
	섬유·의복	-	어망 및 기타 끈가공품 제조업, 유아용 의복·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등
	펄프·종이	식품 위생용 종이상자 및 용기 등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등
	석유·화학	치약비누 및 세제·화장품 제조업 등	원유 정제처리업·합성고무 제조업 등
	의료·의약품	완제 의약품·의료용품 제조업 등	완제 의약품·한약약품·의료용품 제조업 등
	고무·플라스틱	플라스틱 관·호스·필름 제조업 등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 등
	비금속 광물	판유리 가공품·포장용 유리용기 등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등
	금속	금속캔·금속 포장용기 등	제철 및 제강업 등
	전자부품	반도체소자제조업	유무선 통신장비·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등
	의료기기 등	의료용 기기 제조업	물질검사 및 분석기구 제조업 등
	전기장비	변압기·절연선 및 케이블제조업 등	광섬유 케이블·조명장치제조업 등
	기계·장비	산업용 냉장·냉동장비,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등	승강기·컨베이어장치·소화기제조업 등
	자동차	자동차 엔진용·차체용 부품 제조업 등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운송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가구 및 기타		-
전기·가스·증기·수도		기타 발전업·가스제조업 등	기타 발전업
하수·폐기물·환경복원 등		폐기물 처리업·금속원료 재생업 등	하수·폐수처리, 폐기물 수입운반·처리업 등
건설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등	일반 전기·통신 공사업, 토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 등
도·소매업		과실 및 채소·육류 도매업, 전자상거래업 등	의약품·의료용품·컴퓨터 도매업 등
운수업		일반 창고업·화물운송업 등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등
기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등	컴퓨터시스템 자문 및 구축서비스업, 손해사정업, 직업훈련학원 등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및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작성

1-2. 해운보증기구 자본금 형성 노력 필요

가. 현황

금융위원회는 해운보증기구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까지 공공부문(산업은행·수출입은행)에서 2,700억원, 민간(해운업계)에서 2,800억원의 출자를 통해 총 5,500억원의 자본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²⁾ 이에 따라, 2014년 및 2015년에 산업은행·수출입은행에서 1,000억원을 출자하였고, 민간에서 248억원을 출자하여 2015년 「한국해양보증보험」이 출범하였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총 1,500억원이 출자되어야 하나, 해운업계 경기불황 등의 사유로 인해 민간출자는 계획(500억원) 대비 저조(248억원)하였다.

[표 7] 한국해양보증보험의 자본유치 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계획 (실적)	공공	600 (600)	400 (400)	600	480	350	270	2,700
	민간	-	500 (248)	400	520	650	730	2,800
	계	600 (600)	900 (648)	1,000	1,000	1,000	1,000	5,500

주: 괄호 안은 실적

자료: 금융위원회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출자(해운보증기구 설립)」사업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한국해양보증보험에 실시한 선출자 부담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동 사업은 2015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액 500억원 중 300억원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출자하였고, 200억원은 불용하였다.

2) 금융위원회는 향후 통상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보다 민간을 중심으로 출자계획을 수립하였으나, WTO 보조금협정은 상품(제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운업 등 서비스업에 대한 보증 지급은 WTO 보조금협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해양보증보험이 충분한 자본금을 형성하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해양보증보험의 자본금 형성은 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는데 이는 민간자본 유치가 부진하였기 때문이다. 해운업계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해운업계의 자발적인 민간자본 유치는 앞으로도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한국해양보증보험에 대한 출자는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는 민간자본 유치실적 부진을 이유로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보전규모를 감소시키고 있다. 2015년에는 예산액 500억원 중 300억원만 출자되었고, 2016년도 예산액 400억원도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되어 2016년 6월 현재까지 예산이 배정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19년까지 총 2,700억원에 달하는 정책금융기관의 부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출자를 통해 보전할 계획이며, 향후 구체적인 보전규모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조선·해운업계 부실채권 증가 등으로 인해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정책수행을 위한 재원부담 여력이 감소하고 있다.³⁾ 또한,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출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해양보증보험의 자본금을 형성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정책적 의지가 크지 않다는 부정적 기대가 시장에 형성되어, 시장에서 한국해양보증보험의 보증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출자는 당초 예산 상 계획대로 집행함으로써 한국해양보증보험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해양보증보험의 자본금이 계획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민간자본 유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은 2013년 11.6%에서 2015년 10.0%로 하락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1.51%에서 3.24%로 2배 이상 상승하였다.

2-1. 기금사업의 일반회계로의 전환 가능성 검토

가. 현 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상품으로, 1976년 농어촌지역의 중소농어민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도입되어 1986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률적 근거를 확립하였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원금에 대한 관리 및 기본금리 지급(2016년 2.59%)은 저축기관(농협·수협)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기본금리 외에 추가적인 장려금리를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기금으로 설치된 것이다.

저축장려금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각각 1/2씩 출연하여 재원을 부담한다. 2015년 정부 출연금은 494억원, 한국은행 출연금 또한 494억원이며, 기금의 저축장려금 집행액은 988억원이다.

[표 1]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의 2015년도 수입-지출 구조

(단위: 억원)

수 입		지 출	
정부 출연금	494	저축장려금	988
한국은행 출연금	494		
여유자금 운용수입	1	여유자금 운용	15
여유자금 회수	14		
계	1,003	계	1,003

자료: 금융위원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반회계로의 전환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전적으로 정부 재정 및 한국은행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재원의 성격과 지출사업의 성격 간 연계성이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사업성 기금은 원이자부담금·수익자부담금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관련성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등을 통해 충당한다. 그러나 동 기금의 수입재원인 정부전입금 및 한국은행 출연금은 ‘농어민 지원’이라는 기금사업 목적과 특수한 연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동 기금의 수입은 공공부문의 일반재원으로서 오히려 일반회계 세입과 성격이 유사하다.

둘째, 기금 규모가 크지 않고 정책사업이 1개에 불과하여 별도 기금으로 운용할 실익이 크지 않다.

동 기금의 주요 사업은 「저축장려금」 1개 사업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단 하나의 사업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며, 사업비 규모도 1,000억원 미만으로 크지 않은 편이다. 이처럼 1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세한 규모의 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국가재정운용 관점에서 효율적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동 기금은 일시자금 외 별도 자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으며, 정부와 한국은행의 재원을 농어민에게 전달해주는 계정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머물고 있다.

농어민 저축원금은 농협·수협에서 자산으로 운용 중이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단지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장려금리를 이차보전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 기금이 운용하는 여유자금(2015년도 연중 운용평잔 78억원)은 수입발생과 자금집행의 시차로 인하여 발생한 초단기성 자금으로, 사실상 기금이 운용하는 자산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동 기금의 2015년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정부 및 한국은행 출연금 수입 988억원이 그대로 전액 집행되어 동 기금이 사실상 정부와 한국은행의 재원을 농어민에게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치고 있다.

넷째, 일반회계로 재원을 변경하여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동 기금을 정비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장려금지급은 법률 상 의무지출이므로 사업수행을 지속할 수 있으며, 법률에 근거가 있는 이상 일반회계 사업이라 하더라도 한국은행의 출연은 가능하다. 그리고 동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경우 복잡한 재정운용 체계를 정비하여 단순화하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2-2. 정책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장려금리 인하계획 수립

가. 현황

금융위원회는 2016년 1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2017년 1월부터 연 저축한도를 상향하고 장려금리는 감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연 저축한도는 현행 일반 농어민 144만원, 저소득 농어민 120만원에서 2017년부터 일괄적으로 240만원으로 증가될 계획이며, 장려금리는 일반 농어민의 경우 현행 수준의 60%, 저소득 농어민의 경우 현행 수준의 50%로 감소될 계획이다.

[표 2] 연간 장려금 지급을 조정방안

	현행(~2016.12.)		개편(2017.1.~)	
	만기 3년	만기 5년	만기 3년	만기 5년
일반	1.5%	2.5%	0.9%	1.5%
저소득	6.0%	9.6%	3.0%	4.8%

자료: 금융위원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정책목표·외부 금리환경 변화·저축 가입수요 변화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재정지출 규모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목적 하에 장려금리를 인하하였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연 저축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농어민의 자산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국회의 예·결산 심의과정 및 정부 내 기금준치평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항이다. 연 144만원의 일반 농어민 저축한도는 1986년에, 연 120만원의 저소득 농어민 저축한도는 1995년에 결정된 것으로, 이후 20년 이상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지속된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7년 1월부터 연 저축한도를 현행 수준의 약 2배로 상향할 계획이며, 이와 같은 개선은 그동안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조치로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저축한도의 증가는 저축원금 증대에 따른 장려금리 지급 규모의 증가를 수반하므로, 금융위원회는 장려금리를 현행 금리의 약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여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행 장려금리 수준은 현재보다 금리가 높았던 1989년에 결정된 것이므로, 현행 저금리 추세에 부합하도록 일정 부분 조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저금리 환경을 감안하여 장려금리를 하향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과거와 동일한 재정지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행정적인 목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장려금리 하향의 적정 수준은 농어민 자산형성 장려라는 정책 목표와 외부 금리환경 변화, 금리 하향에 따른 수요 감소충격 최소화 등 제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동 저축의 핵심적인 가입유인인 장려금리를 인하할 경우 상향된 저축한도에 따라 실제 저축규모가 증가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농어민이 동 저축에 가입하는 주된 동기는 높은 금리에 따른 이자수입을 얻는 것이나, 개편안대로 장려금리를 인하하는 경우 가입자가 저축액을 2배로 늘려도 과거에 비해 얻게 될 이자수입 증가분은 크지 않은 반면, 납입해야 하는 금액만 2배로 증가하기 때문이다.¹⁾

1) 반면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저축한도 증가는 소득공제 증가로 이어지는 장점도 있다.

2-3. 가입기준 및 유형 분류체계 재검토 필요

가. 현황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준은 가입 대상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농가, 어가, 축산업가 등 유형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가입자 내에서 일반 농어가와 저소득 농어를 구분하여 서로 다른 장려금리를 적용한다. 주요 구분기준으로 농가는 경지면적, 어가는 어선의 톤수, 축산업가는 가축별 사육규모를 각각 사용하며, 구체적인 유형별 구분기준은 [표 3]과 같다.

[표 3] 유형별 주요 가입기준 및 일반·저소득 구분 기준

	가입불가	일반	저소득
농가	경지면적 2ha 초과	경지면적 1ha~2ha	경지면적 1ha 이하
어가	어선 톤수 20톤 초과	어선 톤수 5톤~20톤	어선 톤수 5톤 이하
축산업가	젖소·사슴 20마리 초과 소·말: 30마리 초과 (후략)	젖소·사슴 10~20마리 소·말: 15~30마리 (후략)	젖소·사슴 10마리 이하 소·말: 15마리 이하 (후략)

자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고하여 작성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주요 가입 대상범위 및 일반농민과 저소득농민 유형 구분 기준은 30년 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변화된 환경에 맞게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의 대부분은 농가로서 법률이 제정된 1986년 이래 30년 간 경지면적 2ha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²⁾³⁾

그러나 30년 전 설정한 경지면적 기준이 2016년 현 시점에서조차 여전히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30년 간 영농규모의 변화 및 기술발달, 농지가격 변동, 재배작물 변화 등 커다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비슷한 경지면적의 농가라 하더라도 영농형태, 영농방법에 따라 소득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2) 2016년 기준 신규가입자의 97.3%는 농협에 계좌를 개설한 농가이다.

3) 2ha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부농으로 인식하여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2ha를 초과하는 농지를 “임차”한 사람 또한 추가로 제외하였다.

수 있다.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1986년 2ha 경지면적을 가입 기준으로 설정한 사유에 대하여 “명확히 확인이 어려우나 그 당시 2ha 이상 농가는 부농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참고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농가당 경지면적 변화추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은 있으나, 경지면적 감소에 비해 농가 감소 추세가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나므로, 농가당 경지면적은 증가추세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⁴⁾

그리고 일반 농가와 저소득 농가를 구분하는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일반 농가인지 저소득 농가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장려금리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나, 이를 구분하는 경지면적 1ha 기준에 대해서도 30년째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편, 어가의 경우는 어선의 톤수(20톤 이하 가입 가능, 5톤 이하 저소득 분류)⁵⁾, 축산업가의 경우 사육규모(젓소·사슴 20마리 이하 가입 가능, 10마리 이하 저소득 분류 등)에 따라 가입 여부 및 저소득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동 기준 또한 1986년 법률 제정 시와 동일하다. 따라서 30년 간 어업·축산업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4) 1998년 경지면적은 189.9만 ha에서 171.1만 ha로 9.9% 감소하였고, 동 기간 농가 수는 141만 3천호에서 114만 2천호로 19.2% 감소하였다. 1998년 이전 농가 수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과거 이혼향도 추세를 고려할 때 농가 수 감소가 경지면적 감소에 비해 더욱 가파른 추세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5) 2014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양식업자, 어선원 등 제외대상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나, 근본기준인 어선 톤수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진 바 없다.

가. 현황

「자금세탁방지추진」사업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실시하고, 금융기관이 제공한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ing)¹⁾를 분석하며, 금융기관이 제공한 고액현금거래(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²⁾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동 사업의 2015년도 예산액은 6억 600만원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중 6억 200만원을 집행하였고 400만 원을 불용하였다.

FIU는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의심거래보고(STR)와 2,000만원 이상의 모든 고액 현금거래보고(CTR)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STR에 대한 상세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국세청·검찰 등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STR 및 CTR 정보를 해당기관에 제공하며³⁾, CTR 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사실을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법원의 영장 등에 의해 금융기관 외부로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2조는 동 법에 따른 수사기관 등에

-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거나,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거래를 보고하는 것
- 2)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로서 은행계좌에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채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죄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채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협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에 제공한다.(후략)
-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가 보고한 정보(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제7조에 따라 검찰총장등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대한 정보제공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법원영장에 근거하지 않고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자금세탁방지 사업은 개인 금융거래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의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금융기관에서 FIU에 제공하는 STR 건수가 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보다 엄밀한 STR 기준을 설정하여 금융기관 외부에 제공되는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2015년 금융기관에서 FIU에 제공한 STR은 62만 4천 건으로, 이 중 4.9%인 3만 1천 건에 대해서만 FIU가 상세분석을 실시하였다. FIU는 ① 금융기관의 정보제공, ② FIU 자체 전산분석, ③ FIU 기초분석관의 검토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상세분석 대상을 선별한다.

우선 금융기관에서는 담당 직원의 판단과 전산분석을 통해 STR을 선별하여 FIU에 제공하며, FIU는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알고리즘에 따른 전산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관이 직접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STR을 선별하는데, 그 비율은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원본 STR의 약 20% 수준이다. 선별된 20%에 대해서는 기초분석관들이 직접 상세분석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며, 최종적으로 전체 제공 건수 중 약 5%에 대해서만 상세분석이 실시된다.

금융기관 외부로 제공되는 금융거래정보의 규모는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금융기관에서 FIU에 제공한 STR 중 약 80%가 전산분석에 의해 자동적으로 제외되고 있어, 금융기관에서 STR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과도하게 FIU에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선 금융기관에서 일반 금융거래정보를 과도하게 STR로 분류하여 FIU에 제공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FIU가 STR의 선별기준을 엄밀히 설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표 1] FIU의 연도별 STR 접수 건수 및 상세분석 건수

(단위: 건, %)

	2011	2012	2013	2014	2015
접수(A)	329,463	290,241	378,742	501,425	624,076
기초분석관 검토(B)	77,335	70,819	33,584	133,071	145,795
(B/A * 100)	(23.5)	(24.4)	(8.9)	(26.5)	(23.4)
상세분석(C)	16,494	21,376	25,030	25,305	30,854
(C/A * 100)	(5.0)	(7.4)	(6.6)	(5.0)	(4.9)

자료: 금융위원회

둘째, 기관요청에 의해 제공된 정보가 실제 탈세 적발 등에 기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FIU에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기관은 주로 국세청으로, 탈세 적발 등을 목적으로 FIU에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고 있다. FIU에서 국세청에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의 경우 개인 금융거래정보가 실제 탈세 적발 등에 유효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세청이 요청하여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과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기관에 대한 개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은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매우 신중히 실시되어야 하므로, 정보 제공의 정당성 여부를 사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기관의 정보 제공요청이 합리적인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CTR 정보의 통보유예 비율이 여전히 과다하며, 현행 6개월의 1차 통보유예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FIU가 CTR 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총 3차(1차 6개월, 2차 3개월, 3차 3개월)에 걸쳐 도합 1년의 범위 내에서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10일 이내 통보가 원칙이며, 통보 유예는 예외로서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2015년 통보대상자 61,815명 중 법률에 따라 10일 이내에 통보를 실시한 경우는 5,960명(9.6%)에 불과하다. 2016년 6월 기준 10일 내 통보비율이 30.7%로서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통보유예비율이 과다하므로 법률 상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한 취지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연도별 CTR 정보 통보유예 실적

(단위: 건, %)

	통보대상자 수		10일 내 통보완료	통보유예			비고 (통보유예중)
	국세청	관세청		1차	2차	3차	
2013	41,246	311	0	41,557 (100)	41,557 (100)	41,049 (98.8)	- -
2014	17,757	-	0	17,757 (100)	11,600 (65.3)	11,600 (65.3)	- -
2015	61,851	-	5,960 (9.6)	55,891 (90.4)	27,916 (45.1)	-	-
2016	26,885	-	8,256 (30.7)	18,629 (69.3)	-	-	18,629 (69.3)

주: 1. ()는 비율: [통보유예, 통보완료, 비고] / 통보대상자 수
 2. 2015년 통보대상자 중 6,437명은 1차 통보유예 중(~6.3까지)
 자료: 금융위원회

또한, 법률은 수사기관 등이 통보유예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FIU가 이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분별한 통보유예 조치가 남발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통제수단이 없다⁵⁾. 현재까지 발생한 통보유예 요청은 100%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라는 동일한 사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사기관 등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FIU에 대한 정보제공요청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행 제도는 1차 통보유예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10일 이내 통보원칙이 준수되지 않는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1차 통보유예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예외규정으로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시 최대 6개월 간 1차 통보유예기간을 두었으므로, 이와 유사하게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서 탄력적으로 통보가 가능하므로, 유예기간을 조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찰총장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범위에서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보가 증거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보가 질문 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그러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공은 법원 영장 등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그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예외를 규정한 법률에서 재차 예외규정을 두면서 유예기간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2015년에 1차 유예되어 6개월 내에 통보된 20,758건 중 50.7%인 10,528건이 유예기간 만료 직전에 통보된 현실을 감안할 때⁶⁾, 1차 유예기간을 단축하여 통보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넷째,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STR을 25년간 보존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보존기간이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FIU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STR을 25년간 보존하고 있다.⁷⁾ FIU는 STR이 범죄의 수사 분석을 위한 자료이므로, 「형사소송법」 상 범죄의 공소시효 중 최장기간인 25년 기준에 맞추어 보존기간을 설정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상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설정한 경우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그 밖의 범죄에는 형량에 따라 1~10년이 공소시효로 설정되어 있다.⁸⁾

6) 나머지 10,203건(49.3%)은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다.

7)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3(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등을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특정금융거래정보,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법 제6조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 및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 25년

8)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인 금융거래정보는 필요 최소한의 기간만 보존되고 조속히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반적인 금융범죄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량을 선고받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괄적으로 최장 공소시효 기간에 맞추어 모든 정보를 25년간 보존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STR 중 상세분석 대상은 5%에 불과하므로, 제공받은 STR을 모두 보존하기보다는 상세분석 대상을 선별하여 보존하는 방안도 개인정보보호 강화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가. 현황

2015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¹⁾은 11조 122억원, 기본재산은 2조 5,252억원으로, 운용배수는 4.4배이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법정운용배수 한도는 20배이며²⁾, 기금 측은 적정운용배수를 12.5배로 설정하고 있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현재 운용배수가 낮을 뿐 아니라 부실률도 매년 낮아지고 있으므로, 농특회계 전출 규모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운용배수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기금의 부실률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5년 1.7%로서 신용보증기금(4.0%), 기술신용보증기금(4.2%) 등 유사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타 기금에 비해 매우 낮다. 따라서 타 기금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이나, 2015년 동 기금의 운용배수는 4.4배로, 신용보증기금(9.4배), 기술신용보증기금(9.0배)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최근 5년간 부실률 현황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부실률	3.2	2.2	1.9	1.8	1.7

자료: 농협중앙회 제출자료를 재작성

- 1) 기금이 신용보증을 실시한 대출금 중 현재까지 상환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예컨대, 5년간 10조원의 대출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실시하였고 이 중 2조원이 상환되었다면, 시중에 남아있는 보증잔액은 8조원이 된다.
-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0조(보증의 한도) ① 관리기관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낮은 운용배수에 따른 기본재산 과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1월 출연료율을 인하하여 수입을 감소시키고³⁾, 2016년에는 농특회계에 대한 전출을 실시(3,000억원)하는 등 운용배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운용배수 전망에 따르면 5년 뒤인 2021년도 기금의 운용배수는 7.0으로 예상되며, 이는 부실률이 2배 이상 높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현재 운용배수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표 2] 운용배수 및 기본재산 증장기전망

(단위: 억원, 배)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보증잔액(A)	117,030	123,715	130,469	136,894	144,250	151,072
기본재산(B)	22,525	22,344	22,201	22,011	21,758	21,476
운용배수(A/B)	5.2	5.5	5.9	6.2	6.6	7.0

자료: 농협중앙회

그러므로 농특회계 전출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기본재산 과다 문제를 해결하고 운용배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라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이 가능하며, 농특회계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농업지원’이라는 공통목적을 지니고 있으므로 재원 이동의 타당성이 인정된다.⁴⁾ 농특회계에 대한 전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기금의 기본재산 과다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매년 세입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특회계의 재정운용 안정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과거 기본재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4조 원을 농특회계로부터 전입 받았으며⁵⁾, 2014년부터는 반대로 농특회계에 대해 전출을 실시하고 있다(2014년 5,000억원, 2015년 1,000억원, 2016년 3,000억원).

3)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0.38%→0.2%, 농·수·산림조합(0.027%→0.013%)

4)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후략)

5) 1972년부터 2010년까지 25차례에 걸쳐 총 5조 4,196억원을 전입 받았다.

4-2. 주택신용보증기금

가. 현황

2015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은 54조 2,867억원, 기본재산은 5조 1,028억원으로, 운용배수는 10.6배이다.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법정운용배수 한도는 30배이며, 기금 측은 적정운용배수를 12.5배로 설정하고 있다.

정부는 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과도한 여유재원을 해소하고, ② 고정·비거치 분할상환 위주로 주택금융시장을 정비하여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며, ③ 대출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5.12월 출연료율 체계 개편을 통해 출연료율을 인하하였다. 그 결과 고정금리·비거치 분할상환 기준요율이 전반적으로 인하되고, 전세자금 대출에 일괄적으로 0.26%의 기준요율을 적용하게 되었다.

[표 3] 출연금 기준요율 개편내용

개편전(2015)		개편후(2016)	
대출유형	기준요율	대출유형	기준요율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인 대출금	연 0.05%	만기 5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인 대출금	연 0.05%
만기 10년 이상의 거치식 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인 대출금	연 0.10%	(삭제)	
만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비거치식 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인 대출금			
기준요율 0.05%, 0.10%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금	연 0.30% (주택도시기금 0.26%)	기준요율 0.05%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금 (단, 임차자금은 0.26% 적용)	연 0.30% (주택도시기금 0.26%)

자료: 주택금융공사

- 6) 금융위원회는 고정·비거치 분할상환에 낮은 출연료율을 적용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고정·비거치 원금 분할상환 위주로 재편하고, 가계부채를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운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지적이 가능하다.

첫째, 부실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추가적으로 운용배수를 높일 여지가 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2015년 부실률은 0.7%로, 신용보증기금(4.0%)·기술신용보증기금(4.2%)과 비교 시 매우 낮은 수준이다.⁷⁾ 따라서 적극적인 운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운용배수(10.6배)는 신용보증기금(9.4배)·기술신용보증기금(9.0배)에 비해 크게 높지 않으므로 추가적으로 운용배수를 높일 여지가 있다.

이에 기금 측은 출연료율 인하⁸⁾, 일반회계 전출(2016년 2,000억원) 등을 통해 운용배수를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세자금대출 등에 대한 출연료율의 추가 인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회계 전출의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계된 사람으로부터 징수한 기금의 재산을 국고의 일반재원으로 이전하여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재정운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증공급 확대가능성 및 출연료율 추가 인하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기금의 운용방향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저소득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구입 수요자에 비해 높은 출연료율을 부담하므로, 출연료율 추가 인하 방안 검토 시 우선적으로 인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5년 12월 개편된 출연료율에 따르면, 고정금리·비거치 분할상환 주택구입수요자의 기준요율은 0.05%이나, 전세대출자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의 기준요율은 0.26%로 0.21%p 더 높다.⁹⁾ 이는 고정금리·비거치 상품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수요자(0.30%)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그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7) 부실률이 1%인 경우 원칙적으로 100배까지 운용배수 설정이 가능하다. 100번 중에 한 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1의 기본재산으로 100배의 보증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각 신용보증기금은 위험을 기피하기 위하여 완충(buffer) 구간을 두고 운용배수를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8) 평균 출연료율: 2013년 0.265% → 2015년 0.247%

9) 주택도시기금의 중도금대출은 '14.1.2 판매 중단되어 신규공급이 없으며, 현재 전세대출만을 신규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 수요자는 주택구입 수요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다.¹⁰⁾ 따라서 향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여유재원 해소를 위한 출연료를 추가 인하방안이 검토될 경우, 전세자금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의 출연료율을 우선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출연료율 인하가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로 연계되어야 하나 그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으므로, 출연료율 인하가 시장에 미친 정책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출연료율 인하로 인해, 대출을 실시하는 국민의 부담이 경감되고 고정·비거치 분할상환에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출연료율 인하를 위한 계획 수립 시 개별 은행이 출연료율 인하에 따라 마진을 어느 수준으로 조정할지 여부가 검토되지 않았으며,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되지 않았다. 즉, 출연료율을 인하하여도 그 혜택은 금융기관이 독점할 가능성이 있으며, 출연료율 인하효과가 대출을 실시한 국민에게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출연료율 인하로 인해 실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현황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향후 출연료율 인하가 대출금리 인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그 정책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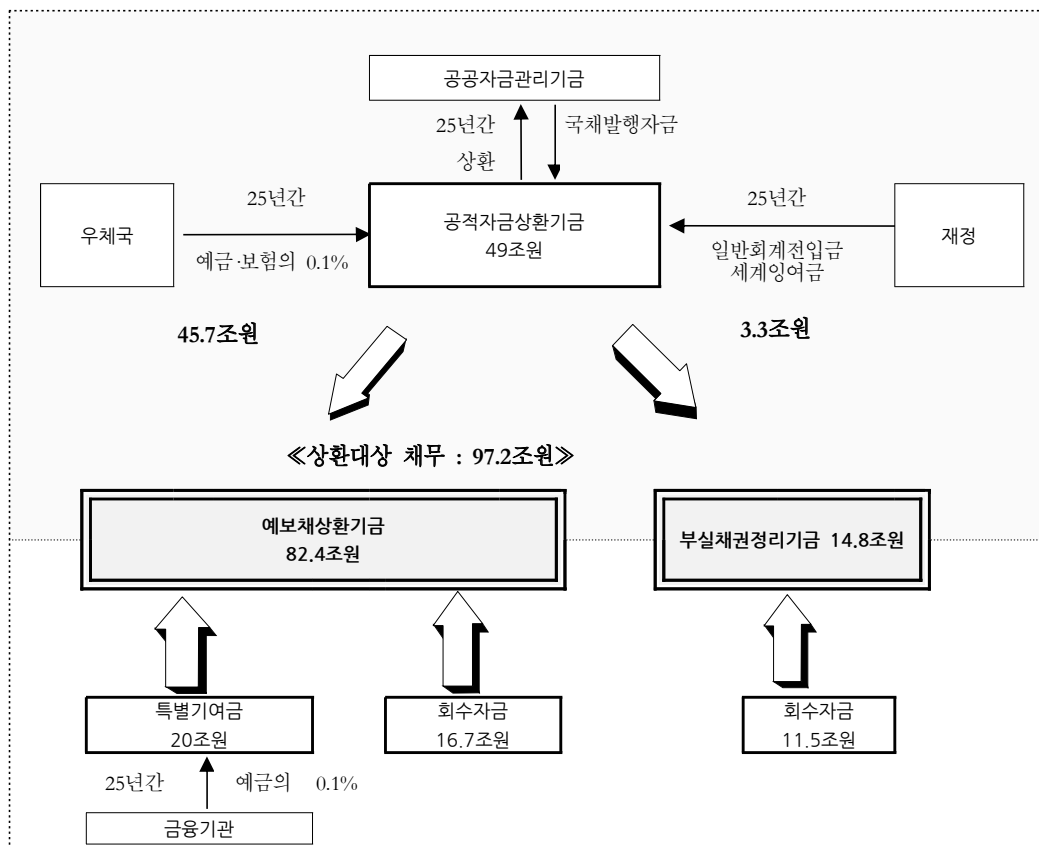
10)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요건은 일반적으로 일정 소득수준 이하자 및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 현황

2002년 수립된 공적자금상환계획에 따르면, 상환대상 부실채권 규모는 총 97.2조원으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49조원을 부담하고, 금융권에서 특별기여금으로 20조원을 부담하며, 부실채권 회수를 통해 28.2조원을 상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49조원의 채무를 2027년까지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전입금 및 세계잉여금, 우체국 예금·보험 기여금 등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를 통해 상환만기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을 공급한다.

[그림 1] 공적자금 상환계획 구조도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2년에 수립된 공적자금상환계획은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향후 집행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재정 재계산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필요한 일반회계전입금 총량을 재추계하고, 이에 근거하여 매년 예산을 규칙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2002년 공적자금상환계획 수립 당시 정부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이 향후 회수할 부실채권 규모를 28.2조원으로 예상하고, 잔여 채무 69조원 중 49조원을 정부 재정에서, 나머지 20조원을 금융권에서 특별기여금으로 부담하도록 하였다.¹⁾

그러나 2013년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정기재계산 결과보고」에 따르면 부실채권 회수자금은 당초 계획을 10조원 이상 초과한 41.6조원이 될 전망이다²⁾, 2012년까지 회수한 자금도 31.7조원에 달해 이미 계획(28.2조원)을 초과달성한 상태이다.

[표 1] 재정 재계산 결과

(단위: 조원)

	정부 재정	금융권 특별기여금	부실채권 회수
2002년 계획	49.0	20.0	28.2
2013년 재계산	35.8~38.3	17.3~19.8	41.6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이에 따라 실제 정부 재정부담은 당초 예상했던 49조원보다 훨씬 적은 35.8~38.3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므로, 정부 재정부담 규모를 49조원으로 가정하여 2027년까지 매년 2조원(2002년 현재가치 기준)씩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실시한다는 과거 계획은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부실채권 회수액이 계획보다 많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이미 일반회계 전입금을 당초 계획보다 적게 편성하여 왔다. 2002년 상환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누적 39조원이 편성되어야 했으나, 실제 전입은 20.6조원만 이루어졌다.

1) 특별기여금은 금융권에서 25년간 예금의 0.1%를 지급한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관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다.

[표 2] 일반회계 전입금 계획 대비 상환 실적

(단위: 조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상환대책(A)	2.0	2.1	2.3	2.4	2.6	2.7	2.9	3.1	3.3	3.5	3.8	4.0	4.3	39.0
실적(B)	2.1	0.25	1.3	3.38	0.02	3.0	1.36	3.85	2.76	1.29	0.2	0.02	1.03	20.56
(일반회계)	2.1	0.25	1.3	3.0	0.02	0.02	0.08	3.0	1.45	0.34	-	-	1.0	12.56
(세계잉여금)	-	-	-	0.38	-	2.98	1.28	0.85	1.31	0.95	0.2	0.02	0.03	8.00

주: 상환실적은 세계잉여금을 포함하며, 세계잉여금은 당초 계획에 반영하지 않음
 자료: 금융위원회

그러나 이러한 예산편성은 변화된 재정부담 총량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매년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진 문제가 있다. 일반회계 전입금 상환이 증장기 차원에서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단년도 사정에 따라 불규칙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미래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어 비효율이 야기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향후 소요될 정부 재정부담 규모를 명확히 산출한 후, 이에 근거하여 연도별 일반회계 전입을 규칙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재정흐름의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소요될 일반회계 전입금 총량 규모를 재추계한 후, 이에 근거하여 단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향후 시행될 2018년 재정재계산 결과를 반영하여 일반회계 전입계획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향후 부실채권 초과회수로 인하여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정부 재정부담 완화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2013년 금융위원회가 「공적기금상환법」 제7조³⁾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정기재계산 결과 보고」는 부실채권 회수자금이 계획 대비 증가함에 따라 향후 금융권의 특별기여금 부담 또한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2013년 시점에서 향후 금융권과 정부재정이 부담해야 할 55.7조원을 당초 분담비율(20조원:49조원)대로 분담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금융권의 최종 부담 또한 1.2~3.7조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3) 「공적기금상환법」 제7조(재계산제도)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시한 결과와 그 조치 예정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표 3] 재정과 금융권 상환분담 방안

<p>1. 재정과 금융권 상환분담 규모</p> <p>(1) 분담원칙</p> <p><input type="checkbox"/> 재정과 금융권은 총 상환부담 55.7조원('02년 현가)을 '02년 공적자금 상환대책상 분담 비율(재정 49조원: 금융권 20조원= 7 : 3)대로 분담</p> <p>(2) 재정과 금융권 분담 금액('02년 현가 기준)</p> <p><input type="checkbox"/> 총 상환부담 55.7조원 중 재정은 39.5조원을 부담하고 <u>금융권은 16.1조원을 부담</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은 기 부담 15.4조원 제외시 향후 24.1조원 부담○ 금융권은 기 부담 6.4조원 제외시 향후 9.7조원 부담- 금융권은 부보예금증가율에 따라 향후('13~'27년) 10.9~13.4조원의 특별기여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금융연구원)

자료: 금융위원회,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정기재계산 결과 보고(2013.8)」

그러나 금융권은 부실기업과 함께 부실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공동책임자인 동시에, 공적자금으로 인해 경영정상화의 혜택을 입은 수혜자이다. 따라서 원인자·수혜자 부담원칙을 고려할 때 금융권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 재정은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조성된 자금으로서 최후에 불가피하게 투입된 것이므로, 금융권의 부담보다는 정부 재정부담을 최우선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권의 특별기여금 경감 정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정산 시 부실채권 회수자금이 초과수납되어 여유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부 재정부담 완화에 우선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미시적 차원에서는 지원 받은 기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거시적 차원에서는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¹⁾ 따라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성과평가는 미시적·거시적 차원에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자체연구 및 외부연구용역을 통해 신용보증이 지원기업의 고용과 재무비율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성과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주기적인 외부 기관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실시한 자체평가 또는 연구용역을 통한 평가는 신용보증 공급이 기업의 고용창출, 매출증가, 영업이익 증가 등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²⁾

그러나 자체 성과평가와 기금재원을 통한 연구용역은 수행주체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1) 일반적으로 금융기관들은 경기침체기에는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대출을 축소하고, 호경기에는 반대로 대출을 증가하려는 경기순응성을 보이므로, 불경기에 오히려 금융기관의 대출기능이 경색되어 경기변동이 심화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경기침체 시 정책자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경기부양을 유도하고 있다.

2) 「중소기업 고용 개선을 위한 신보고용지수 개발(신용보증기금, 2015)」은 2011~2013년 신용보증 지원기업들이 매년 고용창출이 증가하고 1인당 인건비가 증가한 것으로 긍정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의 성과분석과 주요사업 적정성 검토(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에서는 2011~2013년 신용보증 지원기업들의 재무비율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총자산·영업이익·부가가치율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2015년 기술금융 지원사업의 종합성과분석(한국생산성본부, 2015)」은 기술보증공급이 기업의 수익성·성장성·안정성 등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였다.

참고로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의 「2015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신용보증 지원 성과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외부기관의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위해 외부 기관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³⁾

한편, 보증공급이 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현행 성과평가는 주기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고용지수 개발’ 등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 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보증 공급의 성과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규모 보증공급 규모에도 불구하고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상 성과지표는 단 2개에 불과하므로, 정부 내 성과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 규모는 매년 각각 50조원 및 20조원에 달하며, 시장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그 성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상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설정된 성과지표는 ‘성장동력 확충부문 보증공급’, ‘일반보증 부실률’ 단 2개뿐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도 정보화사업을 제외하면, ‘창조경제지원분야 신규공급’, ‘기술보증사고율’ 2개에 불과하다.

기금 측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실적, 보증공급의 신규고용창출 기여, 창조형기업 발굴, 기업가치평가 활성화, 구상권회수 확대 등 다양한 계량지표에 의해 성과평가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국가의 재정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이므로, ‘재정사업 성과평가’ 시에도 기금의 업무수행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중립적인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인 KDI(2014), “중소기업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I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정량적 성과 면에서 다양한 추가 개선의 여지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음. (중략) 2009년 지원이력의 2011년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신용보증기금이 지원한 사업체들은 지원받지 않았을 때에 비해 매출 면에서 증가가 없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고용이 증가하지 않고 임금도 증가하지 않은 반면 생존율은 6.75%p 매우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 「2015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2015.5)」, p.306

가. 현황

「대위변제」사업은 주택금융신용보증에 부실이 발생한 경우 기금이 보증채무를 직접 이행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이다. 동 사업의 2015년도 계획액은 3,241억 7,500만원으로, 주택금융공사는 이 중 3,240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고 7,900만원을 불용하였다.

「청사유지관리」사업은 금융위원회 임차청사의 임차보증금, 임차료 및 관리비를 임대인(서울신문사)에 지급하는 것이다. 동 사업의 2015년도 예산액은 36억 8,200만원으로, 이용 및 전용을 통해 1억 9,000만원을 증액한 예산현액 38억 7,2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다.

「국가재정법」 제3조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5년에 발생한 지출수요는 2015년 세입을 재원으로 지출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 「국가재정법」 상 이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표 1] 2015년도 기술평가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계획액)	이·전용 (계획변경)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불용액
대위변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324,175	-	324,175	324,096	79
청사유지관리 (일반회계)	3,682	190	3,872	3,872	-

자료: 금융위원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대위변제」사업과 「청사유지관리」사업은 각각 집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

첫째, 주택금융공사는 2년 연속 연말에 대위변제금 부족액이 발생하자 이를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차년도 예산으로 지급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주택금융공사는 2015년 대위변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12월말 부족액이 발생하자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권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부족분 330억원을 차년도 1월에 지급하였다.

공사 측은 연말에 예상치 못한 소송패소가 발생하여 기금운용계획변경을 실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패소로 연말에 지급한 금액은 123억 원이며, 이를 제외하더라도 200억원 이상 부족분을 차년도 예산을 통해 지급하였으므로, 주택금융공사의 소명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말 부족분을 협의를 통해 차년도 1월에 지급한 사례는 2015년 뿐 아니라 2014년에도 발생하였다. 주택금융공사는 2014년말 대위변제금 부족이 예상되자 기금운용 계획변경을 통해 980억원을 증액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액이 발생하여 이를 차년도 예산으로 지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¹⁾

그러므로 향후 연말 예산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그 규모를 사전에 정확히 추계하여 기금운용계획변경을 실시함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위원회는 매년 월말 임차료 부족분을 차년도 예산으로 집행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임차료 부족을 이유로 2014년 12월 임차료(1억 4,500만원)를 2015년도 예산을 통하여 집행하고, 이로 인해 2015년 임차료가 재차 부족해지자 2015년 12월 임차료(1억 7,000만원)를 재차 2016년도 예산을 통해 지출하면서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2016년 5월부터 금융위원회가 임차청사를 떠나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하게 됨으로써 임차료 부족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향후 이와 같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1) 주택금융공사는 차년도 예산으로 지급한 대위변제금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가. 현황

「한계기업」이란 재무구조가 부실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등 상대적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의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의미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한국은행·KDI 등 정책기관은 [표 1]의 기준에 따라 각각 한계기업을 정의하여 관리하고 있다.

[표 1] 정책기관별 한계기업 분류기준

구분	신보	기보	한국은행	KDI
관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금 보증금액이 업종 평균의 2배 초과 & 보증이용기간 10년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금 보증금액이 업종 평균의 2배 초과 & 창업 후 5년 초과 	-	-
세부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심사등급이 13등급 이하 (15등급 체계 중) ■ 보증심사등급 2등급 이하이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개년 연속 차입금이 매출액 초과 · 최근 2개년 연속 EBITDA이자보상배율 1미만 · 최근 2개년 연속 당기순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 적자 시현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잠식 ■ 최근 2개년 연속 총차입금이 매출액 초과 ■ 최근 2개년 연속 당기순손실 ■ 최근 3개년 연속 영업활동 후 순현금흐름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 3년 연속 영업활동 후 현금흐름 부(-) ■ 자기자본 전액잠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년도 이자보상배율 1미만

자료: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기관의 한계기업 관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정책기관별 상이한 한계기업 분류기준을 활용하고 있어 객관적인 한계기업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다.

앞서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은행 및 KDI의 한계기업 분류기준은 각각 다르다. 이처럼 기관 간 한계기업 분류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하는 경우, 국가 전체 차원에서 객관적인 한계기업 지원 현황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한계기업의 정의에 대한 공통된 기준을 수립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업종별·기업별로 다양한 특성을 갖는 기업들은 하나의 기준 아래 분류하는 것은 자칫 획일적인 분류가 될 위험성도 있다.

그러나 한계기업 분류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정책기관별로 상이한 한계기업 정의가 난립하는 현실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한계기업을 탄력적으로 정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책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전 정부 차원의 공통기준 및 업종별·기업별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한계기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잔액 비율 및 한계기업으로 진입하는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기술신용보증 지원기업 중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은 최근 5년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2015년에 보증잔액 및 지원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한계기업 보증잔액은 2014년 5,657억원에서 2015년 7,552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총보증잔액 중 한계기업 보증잔액 비율은 매년 평균 3.0%를 유지하였으나, 2015년에 3.8%로 상승하였다.

또한, 지원기업 중 한계기업의 수는 2011년 299개에서 2015년 586개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보증 초기에는 한계기업이 아니었으나 한계기업으로 신규 진입한 기업 수가 2011년 148개에서 2015년 370개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2]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계기업 보증잔액 규모 및 비율

(단위: 억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계기업 보증잔액(A)	5,206	5,225	5,266	5,657	7,552
총 보증잔액(B)	170,252	176,583	189,355	191,782	198,460
(A/B)*100	3.1	3.0	2.8	2.9	3.8

자료: 기술신용보증기금

[표 3]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계기업 진입기업 및 한계기업 수

(단위: 개)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계기업 진입기업	148	174	217	269	370
지원 중인 한계기업	299	322	369	430	586

자료: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에 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한계기업 증가의 주된 원인은 경기불황으로 파악되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다른 기관보다 강화된 한계기업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것에도 기인한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신용보증기금과 같이 10년 초과 장기보증기업을 대상으로 한계기업을 분류하는 경우 한계기업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설명이다.

그러나 저성장 및 경기불황을 감안하더라도 2015년에 한계기업 보증잔액 비율이 급증하였고 최근 5년간 지원 한계기업 수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한계기업 분류기준 적정성에 대해서는,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정부 차원의 공통된 분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비상임위원에 대한 조사활동비 지급의 문제점(행정인사과)

가. 현황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 중 비상임위원은 총 4명으로, 금융위원회는 2015년 비상임위원에 대하여 회의참석수당·안전검토사례금 및 조사활동비 등 총 1억 500만원을 일반수용비 비목으로 지급하였다.

이 중 조사활동비는 월정액으로 100만원씩 지급하며, 비상임위원 4명에게 2015년에 지급된 조사활동비는 총 4,800만원이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금융위원회는 비상임위원에 대하여 회의참석 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100만원의 조사활동비를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예산안 편성지침 위반 소지가 있고 타 행정위원회에서 유사한 운영사례를 찾기 어려우므로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비상임위원의 폭넓은 전문지식 축적 필요성을 이유로 2008년 금융위원회 출범 시부터 비상임위원에 대하여 매월 100만원의 조사활동비를 지급하여 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20조 및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제16조를 조사활동비 지급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칙들은 비상임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¹⁾, 회의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조사활동비의 근거는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1)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20조(수당 등) ① 제3조제6호의 위원이 위원회 및 간담회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제16조(수당등) ①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및 간담회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201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위원회 운영경비 편성 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검토비’를 일반수용비로 편성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사활동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오히려 “비상임위원회의 위원회 참석비를 월정액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유의사항으로 명시하여 회의 참석 여부에 관계없이 월정액으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회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100만원의 조사활동비를 정액 지급하는 금융위원회의 관행은 예산안 편성지침 위반 소지가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다른 행정위원회²⁾의 경우에도 비상임위원에 대하여 회의참석수당 및 안전검토사례금 이외에 조사활동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사례가 없다.

따라서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에 대한 조사활동비 지급은 예산안 편성지침 위반 소지가 있고, 타 행정위원회에서 유사한 사례가 없는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1] 행정위원회별 비상임위원 지급수당(회의 1회 개최 시)

(단위: 만원)

	금융위	공정거래위	국민권익위	원안위
회의참석비	10~15	10~15	10~15	15
안전검토비	금융위 60 증권위 45	40 *3시간초과시 시간당5만원추가	30	30/건당
조사활동비	월정액 100	-	-	-

주.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외함
자료: 금융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2) 중앙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이를 표시할 권한이 있는 위원회를 의미한다.

가. 현황

금융위원회는 직원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기획조정관실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사업 내에 복리후생비로 직원 하계휴가 지원비 2,000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1,752만원을 집행하였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16박) 민간 숙박업체인 ○○리조트 객실 4~5개를 임차하여 36명의 직원에게 1인당 2박 3일 숙박료(평균 48만원)를 지원하였으며, 동 업체는 2013년 이후 3년 연속 금융위원회로부터 임차비용을 지급받았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금융위원회는 복리후생비에 하계휴가비 예산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계휴가비를 정당하게 집행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하계휴가 지원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가 예산으로 매년 동일한 민간 숙박업체를 지정하여 하계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하계휴가 지원은 추첨을 통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후생복지시설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별도의 예산조치를 수반하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진다.¹⁾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최근 3년 평균 1,700만원의 국가 예산을 숙박업체에 직접 지급하였는데 타 부처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운영 사례를 찾기 어렵다.²⁾ 특히 3년 연속 동일한 업체에게 총 5,200만원의 예산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예산집행이라 할 수 없다.³⁾

둘째, 직원 자부담 없이 숙박비를 전액 지원하여 그 혜택이 과도하다.

국가에서 공무원의 하계휴가를 지원하는 경우 저가의 이용권을 제공하되, 공무원이 일정한 자부담을 수반하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일체의 직원 자부담

1) 공무원연금기금이 소유한 후생복지시설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권리를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2) 2013년 1,680만원, 2014년 1,740만원, 2015년 1,75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3)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저렴한 가격을 이유로 해당 업체를 선정하였다는 입장이다.

없이 하계휴가 숙박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그 혜택이 과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셋째, 숙박 여부에 대한 증빙이 실시되지 않아 국가 예산으로 집행되는 동 사업이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곤란하다.

국가 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은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직원의 실제 숙박 여부에 대한 증빙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⁴⁾, 하계휴가 지원혜택이 실제로 금융위원회 직원의 후생 증진으로 이어졌는지 확인이 곤란한 문제가 있다.

휴가지원 혜택을 받은 금융위원회 직원은 2013년 42명, 2014년 48명, 2015년 36명으로서 지원대상 직원의 1/5에 달한다.⁵⁾ 이처럼 다수의 직원이 유사한 시기에 동일한 장소에서 일괄적으로 하계휴가를 보내는 사례는 드물다 할 것이며, 타인에 대한 숙박권 양도가 발생할 유인을 배제할 수 없다.

4) 금융위원회는 본인확인 실시 여부는 계약상대자의 소관 사항이며, 직원들이 실제 숙박하였다는 증빙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5) 금융위원회 현원은 2015년 기준 263명이나, 과장급 미만 직급을 대상으로 하계휴가 지원을 실시하므로, 실제 지원대상은 약 200명 내외로 추정된다.

가. 현황

「기술평가 신용대출 이차보전」사업은 기술에 기반한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에서 기술신용정보를 활용한 대출을 실시하는 경우 대출기업의 신용대출금리 일부(1~3%p)를 대출기업에 지원함으로써 기술기반 신용대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동 사업은 「기술평가」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2015년도 계획액은 편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하여 60억원이 증액되어 이 중 9억원만 집행되었고 51억원이 불용되었다.

[표 1] 2015년도 기술평가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수정계획액	집행액	불용액
기술평가	7,000	13,000	7,554	5,446
- 기술평가신용대출이차보전	-	6,000	917	5,083

자료: 금융위원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술평가 신용대출 이차보전 사업은 계획이 미흡하여 사업 수행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집행이 매우 부진하였다.

첫째,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연중에 계획변경을 통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었다.

동 사업은 2014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계획액 37억 5,000만원), 2015년에는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정부가 사업의 필요성을 재차 인정하여 2015년 3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60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연중에 사업이 다시 추진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둘째, 이차보전비용 지급방식을 선지급에서 후지급으로 변경하면서 집행이 부진하였다.

동 사업은 2014년 신규사업으로 집행 당시 대출이 발생함과 동시에 1년치 이차보전 비용을 은행에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는 ‘선지급’ 방식으로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4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의 시 지출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지출하는 것은 지출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매월 발생한 이차보전 비용을 ‘후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선지급 방식은 1년치 예산을 미리 은행에 지급하므로, 2015년 6월에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2015.6월~2016.5월 1년치 이차보전비를 전액 지급하나, 후지급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월 단위 사후정산을 실시하게 되어 지출 규모가 감소한 것이다.

셋째, 당초 계획되지 않은 최저금리 제한조건이 부과되면서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였다.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최저금리 제한(대출기업이 부담하는 최저금리를 2.25%로 제한)을 조건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로 인해 일부 기업의 경우 부담해야 할 금리가 높아져 당초 계획보다 불리한 조건을 수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¹⁾

이처럼 동 사업은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집행과정에서 많은 제도변경을 통해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집행이 부진하였으므로,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동 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철저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예컨대, 3%p의 이차보전을 받는 기업의 대출금리가 4.5%인 경우, 종전에는 부담해야 할 금리가 1.5%였으나, 최저금리 제한 도입 후 부담해야 할 금리가 2.25%로 상승하게 된다.

가. 현황

「불합리한 금융관행 조사 및 개선」사업은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하여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동 사업의 2015년도 예산액은 2억 3,000만원으로, 이 중 1억 1,800만원이 이용 감액되어 예산현액은 1억 1,200만원이 되었고, 이를 전액 집행하였다.

[표 1] 2015년도 불합리한 금융관행 조사 및 개선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액	이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230	-118	112	112	-

자료: 금융위원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5년 7월에 활동이 종료될 한시조직을 운영하면서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12개월분을 편성하는 등 예산을 과다편성하여 집행이 매우 부진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은 불합리한 금융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점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2013년 8월에 신설된 한시조직으로, 2년간 활동을 마치고 2015년 7월에 활동을 종료할 계획이었다.¹⁾ 따라서 2015년 기획단의 운영기간은 7개월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금융위원회는 기획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를 12개월분 편성하여 필연적으로 잔액이 발생하였다(2,300만원). 간담회 개최도 총 12회를 계획하여 위원수당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월 2회 간담회 개최가 어려워 230만원만 집행하였다.

또한, 기획단의 2년 간 활동실적을 기록한 백서 발간계획이 취소되고(1,000만원 불용), 연구개발비도 2건 중 1건만 수행하여 4,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이 부진한 문제가 있었다.

1)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13.7.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2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표 2] 불합리한 금융관행 조사 및 개선사업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2015년도 예산	2015년도 결산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운영	인건비: 37 1,542천원 * 2명 * 12개월	인건비: 23 1,939천원 * 2명 * 6개월 명절휴가비 700천원
	일반수용비 56 사무기기 및 소모품 11.2 인쇄비 5.8 정기간행물 등 2.1 회의용 생수 2.4 비품수선비 0.9 인포맥스 4.4 간담회 위원수당 20 백서 발간 10	일반수용비 20 사무기기 및 소모품 5.1 복사기 토너 5.9 복사용지 0.6 신문구독료 0.9 회의용 생수 1.8 인포맥스 3.5 실무전문가포럼 참석수당 2.3
	기타 15 - 특근매식비·복리후생비 등 15	기타 7 - 특근매식비·복리후생비 등 7
여비	국내여비 8	국내여비 3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10	사업추진비 8
직무수행경비	직무수행경비 18 - 고공단 나 900천원 * 12월 10,800천원 - 4급(을) 300천원 * 2인 * 12월 7,200천원	직무수행경비 9 - 단장 900천원 * 6.5월 5,850천원 - 팀장1 300천원 * 1 * 6.5월 1,950천원 - 팀장2 300천원 * 1 * 3.5월 1,050천원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80 - 실태조사등을 통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발굴 40 -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이용 행태 및 행동편향 분석을 통한 판매체계 개선 40	연구개발비 40 -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용역 40
연금지급금	기타직 연금 4	기타직 연금 2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2	-
계	230	112

자료: 금융위원회

가. 현 황

「구상권관리」사업은 채권보전조치·소송·공탁비용 등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인 신용보증지원·구상권회수를 수행하는데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동 사업의 2015년도 계획액은 1,078억원으로 이 중 750억원이 집행되었고 328억원이 불용되었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구상권관리 사업은 3년 연속 집행률이 60%대로 부진하였으므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구상권관리 사업의 최근 3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매년 60%대로 부진하며, 주된 원인은 채권보전조치·소송비용·상각채권관리비·상각채권 회수위임비용의 집행부진에 기인하였다.

[표 1] 구상권관리 사업 3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계획	실적	집행률	계획	실적	집행률	계획	실적	집행률
채권보전조치·소송비용	27,610	21,446	77.7	25,914	19,178	74.0	27,900	13,064	46.8
공탁비용	73,884	35,901	48.6	66,532	36,780	55.3	49,000	44,125	90.1
소송패소·경매불인정비용	1,997	2,499	125.1	2,990	4,107	137.4	3,270	3,920	119.9
상각채권관리비	27,358	17,894	65.4	22,000	11,704	53.2	19,630	8,582	43.7
상각채권 회수위임비용	2,220	1,334	60.1	1,900	1,253	65.9	1,000	-	-
기타 구상권관리비	8,030	6,373	79.4	7,434	5,614	75.5	7,010	5,323	75.9
합 계	141,099	85,447	60.6	126,770	78,636	62.0	107,810	75,014	69.6

자료: 신용보증기금

① 채권보전조치·소송비용이 매년 계획 대비 부진했던 이유는 구상잔액 및 부실발생액을 과다추계하고 소송비용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동 비용은 「2014년 구상잔액 +

2015년 부실발생액」에 「최근 3개년 채권보전·소송비용 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데, 최근 부실률 감소 추세에 따라 구상잔액 및 부실발생액(5.8조원)이 계획(6.5조원)보다 적게 발생하였고, 변호사를 통한 소송보다는 법무사를 통한 지급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함에 따라 소송비용이 감소하였다.

② 상각채권관리비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특수채권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있으나 이를 예산편성 시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계상되어 집행이 부진하였다.¹⁾²⁾ 상각채권관리비는 「전년도말 특수채권잔액」에 「최근 3개년 평균 상각채권관리비용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데, 신용보증기금은 당초 2014년말 특수채권잔액을 13.0조원으로 예상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특수채권 추가 매각 및 특수채권 시효완성 등에 따라 실제 잔액은 10.5조원 규모로 감소하였다.

③ 상각채권 회수위임비용의 경우 회수위임제도 폐지에 따라 전액 집행되지 않았으나, 2016년부터는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동 사업의 2016년도 계획액은 전년 대비 122억원이 감액된 95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최근 집행추세를 감안 시 여전히 일정 부분 불용이 예상되므로, 향후 소요내역을 보다 정확히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1) 신용보증기금은 2013년 1.6조원, 2014년 2.1조원, 2015년 1.5조원의 특수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였다.

2) 상각채권은 대손상각채권의 준말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금액을 수익에서 차감해 일반 채권에서 삭제한 것을 의미한다.

가. 현황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는 운영비, 공공요금 및 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5년도 예산액은 25억 7,200만원으로, 인쇄비 부족 등을 충당하기 위해 5,300만원을 전용 증액하여 예산현액은 26억 2,500만원이 되었으며, 이 중 26억 1,500만원이 집행되었고 1,000만원이 불용되었다.

[표 1] 2015년도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2,572	53	2,625	2,615	10

자료: 금융위원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금융위원회는 청소·보안용역비, 시설비 집행 시 비목을 예산집행지침 상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 용도에 맞지 않게 집행하였다.

「2015년도 예산집행지침」의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르면, 청사의 시설관리 업무를 외부 위탁하는 경우 그 비용은 위탁사업비(210-15)로 편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청소·보안용역비를 일반수용비(210-01)로 편성하여 1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다. 청소·보안용역비는 청사의 시설관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탁사업비로 비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책상, 의자, 칸막이 등 기자실 물품 구입비용 1,000만원을 시설비(420-03) 비목으로 집행하였다. 그러나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 상 시설비는 건물 공사 등을 위한 용도로 집행되어야 하며, 책상, 의자 등 사무용 집기류 구입비는 자산취득비(430-01)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비목을 용도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것으로서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 현황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국비훈련비 정산금, 연체료 등 수입으로 구성된다. 기타경상이전수입의 2015년도 예산액은 4억 5,200만원으로, 1억 2,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100만원을 수납하였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은 과거 특정시점(2010~2012)의 평균 수입실적을 지속적으로 산출근거로 활용하고 있어 최근 수입실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금 등으로 구성되어 사전에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으므로 최근 3년치 수입실적 등 과거 실적의 평균치를 활용하여 세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최근 수입실적의 평균이 아닌 2010~2012년 평균 수입실적에 근거하여 4억 5,200만원 규모의 세입예산을 매년 지속적으로 편성하고 있다.¹⁾ 이처럼 특정 시점의 평균 수입실적을 반복하여 산출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최근 수입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최근 3년 평균 수입실적으로 산출근거를 대체할 필요가 있다.

[표 1] 2015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세입예산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4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 '12년 보조사업 반납금 평균: 297백만원 (434+303+153)/3 = 297 ■ '10년 ~ '12년 잡수입 평균: 154백만원 (91+131+237)/3 = 154 * '12년 임차보증금 반환분(1,207) 제외

자료: 금융위원회

1) 2014년 이후 매년 동일하게 4억 5,2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전입금 발생(2,000억원)으로 2,00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다.

집 필

심 의 | 김 광 목 예산분석실장
윤 용 중 예산분석심의관
상 지원 예산분석총괄과장
서 세 옥 산업예산분석과장
문 종 열 사회예산분석과장
박 동 찬 행정예산분석과장
이 은 정 법안비용추계1과장
장 태 성 법안비용추계2과장
이 선 주 법안비용추계3과장

작 성 | 심 지 현 예산분석관
윤 나 나 예산분석관
윤 주 철 예산분석관

지 원 | 정 진 아 행정실무원

결산분석시리즈 I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16년 7월 8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913-0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6